

신명기 24:1-4에 나타난 קְרָבָה וְעֵרְוָה와 동사 הִטְמִינָה의 상관관계 연구

이창엽*

1. 들어가는 말

신명기 21:10-21; 22:13-29; 24:1-4; 25:5-12 등의 구절은 신명기의 가족법에 해당한다. 신명기 21:10-21은 사로잡은 여인과의 혼인 문제(신 21:10-14),¹⁾ 미움 받는 아내가 낳은 장자의 권리(신 21:15-17), 불량한 아들의 경우(신 21:18-21)를 각각 다룬다. 이 구절들은 계층적인 부계주의 안에서 권위의 문제를 다룬다. 신명기 22:13-29는 결혼한 여인의 명예훼손(신 22:13-21), 간음(신 22:22-27), 약혼하지 아니한 여인과 동침(신 22:28-29) 등을 소개하는데, 이 구절들은 간음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신명기 24:1-4는 이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난 뒤 이 여인과 다시 재혼하려는 남자의 문제(palingamy)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5:5-12는 형수취수제도(5-12절)와 부당해 보이는 여인의 독특한 행동(11-12절)을 소개한다.

위에 언급된 신명기 구절에서 이혼과 연관된 구절은 신명기 22:13-21과 24:1-4이다. 신명기 22:13-21은 간음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결혼한 여인의 명예가 훼손당한 경우를 소개한다. 결혼한 아내를 부당하게 미워하여 비방 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운 다음에, 결과적으로 남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양의 의무에 벗어나려는 남자의 계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및 부당한 주장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 changyoplee@anyang.ac.kr.

1) 사로잡은 여인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었지만, 그녀가 아내가 된 후에는 다시는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규정은 남편의 권위를 제한하므로 계층적 부계주의와 연관된다.

에 대한 두 배의 벌금까지 소개한다.²⁾ 신명기 22:13-21은 여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여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는 절차를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룬 신명기 24:1-4는 엄밀하게 이혼법을 다루기보다는 이혼한 후 생길 수 있는 특수한 일련의 사건을 다룬다. 신명기 24:1-4는 남녀 쌍방 간에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결혼과는 달리 남자가 아내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서로 갈라서는 절차가 신명기 24:1, 3에 소개된다.³⁾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남자는 먼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남자의 집에서 내보내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신명기 24:1-4는 이혼을 허용하고, 재혼을 소개한다. 그런데, 신명기 24:4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난 뒤 마지막 남편에게서 이혼 증서를 받거나 그 마지막 남편이 죽은 후 첫 번째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 다시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소개한다.⁴⁾ 재혼하였지만 다시 이혼했거나 혹은 사별로 인해 또 다른 남편을 잃은 전처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음에 대한 근거로 『개역개정』 신명기 24:4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진술은

2) 신 22:13-21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다루므로 민법 840조 3호에 해당된 사항을 다룬다. 민법 840조에 대한 것은 주 44를 참조하라.

3) 신 24:3의 ‘미워하다’는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이혼’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로 볼 수 있다. R. Westbrook,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B. Wells and R. Magdalene, eds., *Law from the Tigris to the Tiber: The Writings of Raymond Westbrook. Volume 2: Cuneiform and Biblical Source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9), 399; A. F. Botta, *The Aramaic and Egyptian Legal Traditions at Elephantine: An Egyptological Approach* (London: T&T Clark, 2009), 60, n. 270.

우리말로 번역된 제임스 B. 프리처드가 편집한 『고대근동문학선집』에 소개되는 결혼 계약서 항목 중에 이혼과 관련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나는 나의 아내와 이혼한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그는 이혼 위자료(silver of hatred, money of hatred)를 낼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혼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미워하다’이다. ‘미워하다’를 의역해서 ‘이혼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번역의 저본인 *The Ancient Near East* (vol. II)에도 ‘hate’가 아니라 ‘divorce’로 영역한 것을 한역한 것으로 보인다(제임스 B. 프리처드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주원준 외 역 [서울: CLC, 2016], 440; H. L. Ginsberg, “Aramaic Papyri from Elephantine”, J. B. Pritchard, ed., *The Ancient Near East: A New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vol.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85. 우리는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이혼과 연관된 전문 용어임을 주목해야 하고, 아랍어 원문이 ‘미워하다’로 표현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A. Botta, *The Aramaic and Egyptian Legal Traditions at Elephantine: An Egyptological Approach*, 59를 참조하라). 한편, 신 22:13, 16에 언급되는 ‘미워하다’는 부당하게도 이미 결혼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암시한다(J. G. McConville,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339.). 아내를 추방할 때 하는 말은 결혼할 때 했던 말과 정반대의 표현이 사용된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호 2:2).

4) 『개역개정』 신 24:3에 언급된 ‘둘째’의 기본 뜻은 ‘마지막(last)’이다.

또한 1절에 언급된 **בְּרֵית עֵרוֹת**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신명기 24:4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이 일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가? 신명기 24:4가 담고 있는 주장을 명확히 알기 위해 신명기 24:1-4를 먼저 구문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동사 **וַחֲמָאָה**와 **בְּרֵית עֵרוֹת** 등 주요 단어를 이어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신명기 24:1-4가 소개하는 핵심 논지를 살펴봄으로서 신명기 24:1-4에 소개되는 법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⁵⁾

2. 본론

2.1. 신명기 24:1-4의 구문 분석

우리는 1-3절 전부가 조건절에 해당하고, 4절이 주절이라고 보는 입장을 칠십인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의 영어 성경(ESV, NIV, NAS, RSV 등)도 1-3절을 조건절로 이해하고 4절을 귀결절로 해석한다.⁶⁾ 워렌(A. Warren)은 신명기 24:1-4는 조건절(*protasis*, P)과 귀결절(*apodosis*, A)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⁷⁾ 그는 아래와 같이 $1b\alpha$ 절에 첫 번째 귀결절(1A)이 있고, 4a절에 두 번째 귀결절(1A')이 있다고 소개한다.

5) 필자는 이 논문을 신명기의 가족법을 다루는 첫 번째 시도로 여긴다. 프레슬러(C. Pressler)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신명기의 가족법을 모두 다루었다(C. Pressler, *The View of Women Found in the Deuteronomic Family Law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1-114.).

6) A. Warren, "Did Moses Permit Divorce? Modal weqatal as Key to New Testament Readings of Deuteronomy 24:1-4", *Tyndale Bulletin* 49 (1998), 41; 폰 라드(G. von Rad), 허신욱 등도 1-3절 전체를 조건문으로 이해한다(G. von Rad, *Deuteronom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150; S. W. Hur, "The Rhetoric of the Deuteronomic Code: Its Structures and Devices", Ph.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2013], 299-301.).

JPS의 타나크(Tanakh) 영역(英譯)은 위에서 소개한 칠십인역을 비롯해서 여러 영역본들과는 다르게 1-3절 전체를 조건문으로 번역하지는 않지만, 2-3절이 1b절에 대한 보충적 설명으로 이해하여, 세미콜론(:)을 각각 1, 2절 끝과 3절 중간에 넣어 표기하고 있다(A. Berlin and M. Z. Brettler, eds., *The Jewish Study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20-421.).

7) A. Warren, "Did Moses Permit Divorce? Modal weqatal as Key to New Testament Readings of Deuteronomy 24:1-4", 43, 45. 워렌(A. Warren)은 그의 논문 45쪽에서 "1-2-3-4A=> T H E N M1 may not marry W"라고 말하는데 1-2-3-4A가 아니라 1-2-3-4P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a	1P(כִּי)	남자(M1-man)는 여자(W-woman)를 취하고 결혼한다
1b α	1A(וְהָיָה)	
	2P(אִם)	여자(W)가 그(M1)의 눈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은혜를 발견하다). 그가 그녀 안에 קָבַר הָעֵרֹוֹת 를 발견했기 때문에
1b β	2A	그(M1)는 이혼 증서를 쓰고, 주고, 내보낼 수 있다(may) ⁸⁾ /이혼 증서를 쓰고, 주고, 내보내야 한다(must) ⁹⁾
2	3P	여자(W)는 그(M1)의 집을 나가 다른 남자(M2)와 결혼한다
3a	4P1	둘째 남자(M2)가 그녀를 싫어하고 이혼 증서를 쓰 고, 주고, 내보낸다
3b	4P2	혹은 둘째 남자(M2)가 죽는다
4a	1A'	그러면, 첫째 남자(M1)가 여자(W)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다
4b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조건절과 귀결절로 결합되어 있는 구문으로 신명기 24:1-4를 분석하는
워렌은 **וְהָיָה**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이를 1A로 구분하였다
(1b α 절의 1A). 워렌은 **וְהָיָה**와 **אִם**을 별개의 내용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귀결절
(1A)과 두 번째 조건절(2P)로 구분한다. 하지만, 워렌은 1A에 해당하는 내
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명기 24:1b α 에 **אִם-לֹא** 앞에 **וְהָיָה**가 기
록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워렌의 분석처럼 **אִם וְהָיָה**을 **וְהָיָה**와 **אִם**
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אִם וְהָיָה** 두 단어가 연결되어 하나의 뜻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신명기
24:1-4를 기존의 분석과는 다르게 읽을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אִם וְהָיָה** 혹은 **אִם-וְהָיָה**이 사용된 구절은 모두 25구절이
다.¹⁰⁾ 먼저 21구절은 완료형 형태(Qatal), 명령형, 분사 형태의 동사가 먼저

8) 여자가 남자(M1)의 호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결혼생활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남자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가 실제로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 1:18-25에 언급되는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지(*ἀπολύω*) 않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온다.

9) 워렌은 1b β 절에 사용된 웨카탈(*weqatal*)형식은 허용적(permissive)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의무적(obligative)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Ibid., 43, 45, 46, 47, 50, 55). 워렌의 분석을 따르면 『개역개정』 번역은 의무적 행동만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마 19:8/막 10:4에서는 허용적 의미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으로 신 24:1b를 해석하는 입장이고, 마 19:7에는 의무적 용법(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으로 신 24:1b를 이해하고 있다.

10) 창 38:9b; 출 4:8, 9; 민 5:27; 15:24; 21:9; 신 8:19; 11:13; 20:11; 21:14; 24:1; 25:2; 28:1; 28:15; 삿 4:20; 6:3; 삼상 3:9; 23:23; 삼하 11:20; 왕상 11:38; 렘 12:16; 17:24; 암 6:9; 7:2; 슥 6:15.

언급되고 이어 **אם ויהיה**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אם ויהיה** 부분은 ‘만약’(if)으로 시작되는 조건문으로 해석된다.¹¹⁾ 이와는 달리 **אם ויהיה** 앞에 미완료형 형태의 동사가 사용된 성경 구절은 모두 4곳인데, 4곳에 사용된 **אם ויהיה**은 앞선 행동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창 38:9b; 민 21:9; 신 24:1; 사 6:3). 4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본다.

오난은 그 씨가 그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고, 그는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다(**אם-ויהיה** 창 38:9).¹²⁾

모세가 구리 뱀을 만들었고, 장대 위에 달았고, 뱀이 사람을 물었다 (**ויהיה-אם**),¹³⁾ 그러나 그는 구리 뱀을 쳐다보고 살았다(민 21:9).

11) 위의 21곳 가운데 암 7:2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스미스(B. K. Smith)는 암 7:2에 사용된 **ויהיה**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it will be)”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개역개정』 번역처럼 과거의 사건으로 수정한다(B. K. Smith and F. S. Page, *Amos, Obadiah, Jonah*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1995], 129). 앤더슨과 프리드만(F. I. Andersen and D. N. Freedman)은 **ויהיה**가 이어 소개되는 문장에 양태의 의미(modal)를 가진다고 보고, 이를 “메뚜기가 땅의 풀을 완전히 먹었을 것이다(and it would have been, it would have completely eaten the vegetation of land)”로 번역한다(F. I. Andersen and D. N. Freedman, *Amos* [New York: Doubleday, 1989], 742.). 암 7:2의 **ויהיה**는 양태론적으로 인지양태(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낸다. 양태론에 대해서는 장성길의 글을 참조하라.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성경원문연구』 38 (2016), 105-107.

한편, 스튜어트(D. Stuart)는 잠재적 미래 사건에 대한 아모스의 전망으로 이해한다(D. Stuart, *Hosea-Jonah* [Waco, Texas: Word, 1987], 370-371). 핀리(T. J. Finley)는 이 구절이 아모스가 갑자기 든 생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는 **אם**을 넣어 조건문으로 만든다면, 귀결절이 없는 조건문(“메뚜기가 땅의 풀을 완전히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and it will happen if they finish devouring the vegetation of the land]”)으로 이해한다(T. J. Finley, *Joel, Amos, Obadiah* [Chicago: Moody, 1990], 281-283.).

12) 게제니우스(W. Gesenius)는 창 38:9에는 “**ויהיה**가 사용되어 느슨하게 연결된 반복 표현의 시제”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는 완료 형태와 함께 사용된 **אם**은 귀결절에서 과거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절로 창 38:9; 민 21:9; 사 6:3 등을 소개한다(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E. Kautzsch, ed. and A. E. Cowley, trans.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2006], §112ec. gg, 159o, 164d). 게제니우스와 유사하게도 주용-무라오카도 창 38:9, 사 6:3에 사용된 **אם**은 시간적인 뜻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한다(풀 주용-T. 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166p.). 왈키와 오코너(B. K. Waltke and M. O'Connor)도 창 38:9; 사 6:3에 사용된 **ויהיה**는 시제를 나타내는 지시어의 기능을 하는데, 창 38:9; 사 6:3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한다(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539, 643). 영어 성경 중 ESV, NIV, NRS와 『표준』, 『새번역』 등은 접속사 ‘할 때마다(whenever)’를 사용하여 시간적으로 반복된 행동으로 이해하여 번역한다. 한편, KJV, NKJ, ASV 등은 앞에 언급된 내용에 이어지는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하여 “it came to pass, when he went in”으로 번역한다. 『개역한글』, 『개역개정』, 『공동』도 이어지는 사건으로 번역한다.

13) 게제니우스와는 다른 입장을 가진 주용-무라오카와 왈키-오코너는 민 21:9는 시간적인

사람이 여자를 취하였고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였다(**והיה אם לא תמנא**) 신 24:1).¹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고(2a), 이스라엘은 파종하였고 (**והיה אם זרע**), 미디안이 올라왔다(삿 6:2-3).¹⁵⁾

위의 4구절에 사용된 **אם** **והיה** 문장은 조건문이 아니라, 앞선 문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어지는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Declarative sentence, D)으로도 읽을 수 있다. **אם**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אם** **והיה**을 결합된 형태로 그 뜻을 읽을 수 있다. 우리의 관심 구절인 신명기 24:1-4를 살펴보자. 신명기 24:1b α 에 **אם** **והיה**이 언급되는데, 이는 신명기 24:1a에 언급된 첫 번째 내용 다음에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녀와 결혼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그는 그녀와 평생 부부로 산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אם** **והיה**이 사용된 신명기 24:1b α 에는 사람이 아내를 취하고, 결혼하였는데 그러나 그녀가 그의 호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소개된다.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그가 그녀에게서 **דבר** **הערוה**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1b α 절부터는 결혼한 두 사람이 헤어지는 내용이 언급된다.

신명기 24:1a에 사용된 **אם** **והיה**을 조건절의 표지로 볼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1a에서 처음 언급된 사건에 연이어 새로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신명기 24:1-4를 분석할 때 1-3절을 조건절로 보기보다는 1a절에 언급된 사건 다음에 1b α 절의 사건이 연이어 소개되고, 3절까지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절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사건으로 읽고 난 뒤, 4절에서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 판단이 내려진다. 1-3절 전체는 4a절에 언급된 주장의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위렌의 읽기를 수정하여 아래에 필자의 입장

의미를 가진 반복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고, “만약 뱀이 문다면”으로 번역하여 조건적인 문장으로 이해한다(폴 주용-T. 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167e, g;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181).

14) 게제니우스는 신 24:1 이하는 이미 시작된 구문이 다른 종류의 구문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하여 파격 구문인 아나콜루톤(anacoluthon)으로 본다(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167b). 1절은 3인칭 남성 단수로 문장이 시작하였고, **אם** **והיה**에 이어지는 동사는 3인칭 여성 단수로 시작되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신 24:1b α 를 좀 더 주어의 성과수를 일치시켜 표현해야 한다면, 민 5:27에서 소개하듯이 **והיה**를 **והיתה**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112y. 참조.).

15) 삿 6:2b 중간에 ‘올라오다’라는 동사는 접속사 없이 완료형 형태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을 소개해 본다.

1a	1D(כי) ¹⁶⁾	남자(M1-man)는 여자(W-woman)를 취하고 결혼한다
1bα	2D(ואתה)17)	여자(W)가 그(M1)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가 그녀 안에 רבר ערות를 발견했기 때문에
1bβ	3D	그(M1)는 이혼 증서를 쓰고, 주고, 내보낸다 ¹⁸⁾
2	4D	여자(W)는 그(M1)의 집을 나가 다른 남자(M2)와 결혼한다
3a	5D	둘째 남자(M2)가 싫어하고 이혼 증서를 쓰고, 주고, 내보낸다
3b	5D'	혹은 둘째 남자(M2)가 죽는다
4a	1D'	그러면, 첫째 남자(M1)가 여자(W)를 아내로 취할 수 없다(1D+2D+3D+4D+5D/5D'=>1D')
4b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필자는 신명기 24:1-4를 조건절과 귀결절의 관계가 아니라 1-3절은 연속된 내용이 담겨 있고,¹⁹⁾ 여러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처럼 이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연속된 사건으로 이해한 후 4절에 최종적 판단이 내려진다고 소개했다.²⁰⁾ 우리는 신명기 24:1-4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남자(M1)가 רבר ערות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내(W)와 이혼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고, 다른 사람(M2)과 결혼한다. 그녀가 재혼한 후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다시 첫 번째 남자(M1)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까지도 허용해야 하는가? 신명기 본문은 이를 금지한다. 그 근거로 『개역개정』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남자(M1)는 그녀와 재혼할 수 없다고 밝힌다. 우리는 ‘더럽혔다’에 해당하는 신명기 24:4a에

16) 신 24:1에 사용된 כי는 법률적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가정의 상황을 의미한다(M. H. Patton, “Working with Biblical Hebrew Prose”, M. V. Van Pelt, ed., *Basic of Hebrew Discourse: A Guide to Working with Biblical Hebrew Prose and Poet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Academic, 2019], 55.).

17) 웨카탈(weqatal)형식은 가정의 상황을 소개한다(M. H. Patton, “Working with Biblical Hebrew Prose”, 64, 144.).

18) 남편이 여자에게 주는 ‘이혼 증서’에서 이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כריחה인데, 문자적으로 ‘절단, 잘라냄’(cutting)을 의미한다.

19) 유대인 영어 성경(TANAKH 영역)도 조건절과 귀결절의 관점에서 번역하지 않고, 연속된 문장으로 소개한다. A. Berlin and M. Z. Brettler, eds., *The Jewish Study Bible*, 420; J. H. Tigay, *Deuteronom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21-222 참조.

20) 새로운 구문론적 시도가 조건절과 귀결절로 이해하는 전통적 입장이 제시하는 바와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 개의 결합된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나름 의미 있는 독법으로 볼 수 있다.

언급되는 동사 הַטָּמְאָה의 형태와 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사 הַטָּמְאָה의 형태 분석과 그 의미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명기 24:1-4 전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2. 신명기 24:4a의 동사 הַטָּמְאָה의 형태 분석과 그 의미

먼저 필로의 해석을 계승한 크레이기(P. C. Craigie)의 입장을 살펴보자. 크레이기는 여자가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녀가 부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이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부정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간음으로 보고, 그는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을 금지하는 레위기 18:20을 신명기 24:3에 적용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첫 번째 남편에 대해 부정해진 것으로 본다.²¹⁾ 하지만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이 그녀를 더럽히는 불법적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녀는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었다.

신명기 24:2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어떤 남자(M1)가 전처와 재결합하고자 하는 특수한 상황(신 24:4)을 말하기에 앞서 신명기 24:1-3에 일련의 선행 사건들을 차례대로 소개한다.²²⁾ 그녀는

21)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305; E. H. Merrill, *Deuteronomy*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1994), 317-318. 메릴(E. H. Merrill)도 크레이기(P. C. Craigie)와 같은 입장이다. 왈튼(J. H. Walton)은 크레이기의 입장은 필로의 해석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웨스트부룩(R. Westbrook)의 해석사를 언급한다(J. H. Walton, "The Place of the Hutqattel within the D-Stem Group and its Implications in Deuteronomy 24:4", *Hebrew Studies* 32 [1991], 13). 야론(R. Yaron)과 프레슬러도 각각 필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한다(R. Yaron, "The Restoration of Marriage", *JJS* 17 [1966], 6; C. Pressler, *The View of Women Found in the Deuteronomic Family Laws*, 53, n. 32.). 필로의 글은 다음을 참조하라. Philo of Alexandria, *Philo, with an English Translation*, F. H. Colson and G. H. Whitaker, trans. (London: Heinemann, 1926-1944), 3.30-31.

배정훈도 크레이기의 입장과 유사하다. 배정훈은 여자가 남자(M1)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M2)과 결혼을 하면 여자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것, 즉 간음으로 평가한다. 그는 신 24:1은 이를 드러내어 말하지 않지만, 다른 남자(M2)와 결혼한 후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하였을 경우 첫 번째 남자(M1)와 재혼을 한다면 그동안 간음이라고 규정되지 않았던 두 번째 결혼이 이제는 간음 행위이고 처음 남자(M1)와 다시 재혼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본다(배정훈, "신명기 24장 1-4절에 관한 주석-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규정", 『장신논단』 45 [2013], 58.). 왕대일은 신 24:1-4는 가부장의 권위가 약화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한다(왕대일, 『왕대일 교수의 신명기 강의: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61.).

22)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이혼에 이르지 않고 부부로 평생을 사는 일반적인 경우는 신

합법적 절차를 따라 이혼하였고,²³⁾ 재혼할 수 있었다(신 24:2).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그녀의 재혼은 결코 간음이 아니다.²⁴⁾ 그녀는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에 해당되기에 크레이기의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크레이기는 우리의 논의에 중요한 어구인 동사 הִטְמֵאָה 의 형태에 대해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동사 הִטְמֵאָה 에 대해 『개역개정』은 그 여자가 “몸을 더럽혔다”라고 번역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⁵⁾ 마소라 본문(MT)은 히트파엘 형태와 연관된 호트파알(Hothpaal, to be defiled) 형태인 הִטְמֵאָה 로 소개한다.²⁶⁾ 그런데 동사 הִטְמֵאָה 의 자음 밑에 다른 모음을 붙여 읽을 경우 여러 가지 다른 독법이 가능하다. 자음을 변형시키거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읽는 첫 번째 독법은 마소라 본문이 소개하듯이 재귀형의 수동 형태인 호트파알 형태(הִטְמֵאָה [후탐마아], 호트파알 완료, 3여성단수)로 읽는 것이다. 호트파알로 읽으면 “그녀가 자신을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다(고려되었다)”로 읽을 수 있다.²⁷⁾ 두 번째 읽기는 동사 הִטְמֵאָה 를 능동 재귀형 형태로 읽는 독법이 또한 가능하다. 동사 הִטְמֵאָה 의 재귀형은 הִטְמֵאָה ([히탐메아], 히트파엘 완료, 3여성단수)인데, 그 의미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고 스스로 선언했다”이다. 마지막 독법은 호팔 형태(הִטְמֵאָה [후트메아], 호팔 완료, 3여성단수)로 읽는 것이다. 이 경우에 동사 הִטְמֵאָה 는 “제삼자가 그녀를 부정하다고 선언(선포)하는 것”을 결국 의미한다. 세 번째 읽기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

24: 1-4에서 다루지 않는다.

23) R. Westbrook,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389.

24) 맥콘빌(J. G. McConville)은 크레이기의 주장처럼 그 여인이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한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J. G. McConville, *Deuteronomy*, 359.).

25) ‘더럽혔다’라는 단어는 니팔 형태(הִטְמֵאָה)로 사용될 수 있는데, 민 5:13-14, 20, 29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침은 하였으나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26) 게제니우스와 주옹-무라오가는 호트파알(Hothpaal)로 부른다(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53. h.; 폴 주옹-T. 무라오가, 『성서 히브리어 문법』, §53h.). 한편, 왈키와 오코너는 호트파엘(Hothpaal) 형태라 부른다. 이 형태에서 *t* 접두어는 동화되었다(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26.3a-b). 왈톤은 후트카텔(hutqattel) 즉 후트파엘로 부른다(J. H. Walton, “The Place of the Hutqattel within the D-Stem Group and its Implications in Deuteronomy 24:4”, 9.).

27) 왈키와 오코너는 호트파알 형태를 수동의 의미를 가진 재귀형으로 보는 이론적 분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동사 형태를 호트파알 형태를 가졌지만 그 의미는 수동형인 푸알(Pual)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26.3a). 게제니우스도 푸알처럼 수동형으로 번역한다(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54. h.). 한편, 주옹-무라오가는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다는 뜻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만, 단순히 그녀가 더럽혀진 것을 뜻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폴 주옹-T. 무라오가, 『성서 히브리어 문법』, §53h.).

수동형 형태로 보는 입장이다.

3가지 독법을 부연 설명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호트파알 형태(הַטָּמְאָה 후탐메아)로 읽을 경우 그녀가 부정하다고 선언된 것이기에 첫 번째 읽기는 그녀의 부정함이 제삼자에 의해 선언되어 알려졌다다는 것을 강조한다.²⁸⁾ 호트파알 독법의 경우 그녀는 수혜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인이 실제로 비도덕적 행동을 한 것 보다는 비도덕적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어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억지로 부정하다고 선언되도록 강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²⁹⁾ 왈톤(J. H. Walton)은 그녀가 부정하다고 선언된 것은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기보다는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든다고 본다.³⁰⁾ 결국 이로 인해 그녀는 이혼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남자(MI)의 집에서 나와야 한다.

두 번째 독법인 히트파엘 형태(הִטְפֹּאֵל 히탐메아)로 읽을 경우, 이혼당한 여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히트파엘 형태로 읽을 경우 여인은 자신을 부정하다고 스스로 선언한 주체이고,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과 책임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다. 이 경우에는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려고 한 여인이 된다. 독자인 우리는 히트파엘 형태가 되도록 모음을 넣어 동사 הַטָּמְאָה를 הִטְפֹּאֵל(히탐메아)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녀가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녀는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혼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

마지막 독법인 호팔 형태(הוֹפֵּל 후트메아)로 읽는 경우인데, 그녀는 주체로서 결정권을 전혀 가질 수 없었고, 다만 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다.³¹⁾ 호

28) 왈톤은 그녀가 부정하다고 선언되도록 강요되었고, 그녀가 부정하다고 보는 견해가 제사장에게 전달되었고, 제사장은 공적으로 이를 알린 것으로 이해한다(J. H. Walton, “The Place of the Hutqattel within the D-Stem Group and its Implications in Deuteronomy 24:4”, 9.).

29) 왈키와 오코너는 히트파엘 형태가 때로 동사의 주체가 수혜를 받는 재귀적 용법(benefactive reflexive)으로 사용된 경우(창 20:7; 수 9:12; 왕상 8:33; 욥 13:27)가 있음을 소개한다(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26.2e.). 하지만, 신 24:4에 사용된 호트파알 형태는 동사의 주체가 자신을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므로 결코 동사의 주체가 수혜를 입는 재귀적 용법으로 읽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왈키와 오코너는 신 24:4의 동사 הַטָּמְאָה를 수혜를 받는 재귀적 용법의 용례로 소개하지 않는다. 재귀형의 수동 형태로 읽을 경우(הַטָּמְאָה) 여성이 수동적으로 더러움을 받는 사실은 표현하지만, 그녀의 처해진 상황이 수혜를 입는 의미가 있는 재귀적 용법과는 어울리지 않기에 필자는 재귀적 용법이 아닌 호팔 형태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30) J. H. Walton, “The Place of the Hutqattel within the D-Stem Group and its Implications in Deuteronomy 24:4”, 12.

31) 왈키와 오코너의 해석에 따르면 피엘형 동사의 목적어는 수동적 대상인 반면에 히필형

팔 형태로 읽을 것을 제안하는 맥콘빌(J. G. McConville)은 제삼자가 그녀를 부정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녀는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다(declared unclean)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³²⁾ 여인 자신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부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남편은 음행의 연고는 아니지만 그녀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녀가 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실수를 빌미로 삼았다. 그녀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고, 일방적으로 선언되었다.³³⁾ 호팔 형태로 읽는 독법에서는 그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삼자가 그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다고 선언한 것이기에 그 여인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결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유력한 제삼자는 바로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일 가능성이 크다. 이혼은 전적으로 사적인 문제였기에, 민사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³⁴⁾ 남편(M1)의 일방적 주장이 당연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은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는 일방적으로 그녀를 부정하다고 선언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그들이 이혼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독법 중 동사 הִטְמֵאָה를 호팔 형태(הִטְמֵאָה 후트메아)로 읽을 때 기존의 읽기와는 달리 신명기 24:1-4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신명기 24:4에 언급된 동사 הִטְמֵאָה를 호팔 형태(הִטְמֵאָה 후트메아)로 읽을 경

동사의 목적어는 제2의 주체로서 동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27.1d, e). 레 13:44에 의하면 제사장은 독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한다(피엘형). 독한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온전히 자신에게 내려진 결정을 수긍했을 것이다.

32) J. G. McConville, *Deuteronomy*, 356, 359-360.

33) 야론은 신 24:4에 언급된 금지규정은 여인의 두 번째 결혼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R. Yaron, "The Restoration of Marriage", 8-9). 야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는 톰슨(J. A. Thompson)인데(J. A. Thompson, *Deuteronomy* [London: IVP, 1974], 244.), 이에 대해 카미카엘(C. M. Carmichael)은 신 24:3에 언급된 두 번째 남편의 죽음 후에도 야론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C. M. Carmichael, *The Laws of Deuteronomy*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205). 웨넘(G. J. Wenham)도 카미카엘의 입장을 지지한다(G. J. Wenham, "The Restoration of Marriage Reconsidered", *JJS* 30 [1979], 37.). 웨넘은 신 24:1의 금지 규정을 근친상간(incest)의 관점에서 이해한다(G. J. Wenham, "The Restoration of Marriage Reconsidered", 38-40). 밀러(P. D. Miller)는 웨넘의 입장을 지지한다(P. D. Miller, *Deuteronomy*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64.).

34) A. Philips, "Some Aspects of Family Law in Pre-Exilic Israel", *VT* 23 (1973), 355, 356. 한편, 신 22:15-21에는 결혼한 후 누명을 쓴 여자의 부모가 공적 재판에서 고소를 당한 딸의 무고함과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 증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J. G. McConville, *Deuteronomy*, 339. 참조.

우, 1절에서 소개된 결혼 이후 남편은 혼인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혼인 상태를 파기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낙인을 찍었고, 여인은 일방적으로 부당한 결정의 희생양이 된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아내를 전적으로 부정하다고 선언한 남편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그녀를 부정하다고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이혼 위자료도 주지 않는 이득을 취하였는데, 어떻게 전 남편(M1)인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둘째 남자(M2)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동사 הִטְמֵאָה를 호괄 형태로 읽는 마지막 독법은 여인이 남편(M1)의 임의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는 상황을 상정한다.³⁵⁾ 결혼과 이혼, 재혼은 남녀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명기 24:4는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남편의 지나친 자의적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³⁶⁾ 신명기 24:1-3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취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또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M1)의 마음까지 제어할 필요가 있기에 신명기 24:4는 신명기 24:1-3에 소개된 복합적 사실에 바탕을 둔 재혼(palingamy)을 금지하고 있다.³⁷⁾

2.3. 신명기 24:1의 רבֿר עֵרוֹת의 의미

רבֿר עֵרוֹת가 1절에 언급되어 구절의 순서상 먼저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35) R. Westbrook,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404.

36) 카우프만(S. A. Kaufman)은 신 23:20-24:7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신 5:20)”에 해당한다고 본다. 신 23:20-26은 남의 물질적 재산을 훔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신 24:1-4와 신 24:5는 비유적으로 사람(נַפֿשׁ)을 훔치는 것을 다루고, 신 24:7은 실제적인 사람(נַפֿשׁ)을 훔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S. A. Kaufma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Maarav* 1:2 [1978-79], 139-140.).

37) 바인펠트(M. Weinfeld)는 신명기와 지혜서 사이에 동일 내용이 나오는 구절들(신 4:2와 잠 30:6; 신 19:14와 잠 22:28; 신 23:15[16]와 잠 30:10; 신 23:22와 전 5:3)을 비교하여 소개하였다(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260-265). 무라오카는 바인펠트의 비교에 주목하면서 부정어가 다르게 사용된 것을 설명한다. 신명기에는 לֹא가 사용되고, 지혜서에는 עַל이 사용된다. 무라오카는 עַל은 더 직접적이고, 당장 일어날 수 있고, 구체적인 화자의 의지를 잘 보여줄 때 사용되는 반면에 신명기에 사용된 לֹא는 좀 더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의 내용에 대해 화자의 부정적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T. Muraoka, “Notes on the Syntax of Biblical Aramaic”, *Journal of Semitic Studies* 11 [1966], 162).

신 24:4에 사용된 לֹא에 위의 설명을 적용해 보면 신명기 저자는 직접적으로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여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고 쫓겨났다가 사적 이익을 바라고 그녀와 다시 재혼하기를 바라는 남자[M1])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이겠지만, 그 의미를 단정을 내리지 않고 잠시 유보하였고, 4절에 언급된 동사 **הטמאה**를 먼저 분석하였다. 동사 **הטמאה**에 대한 분석이 신명기 24:1-4 전체를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동사 **הטמאה**의 의미를 확인하고 난 뒤 이제 신명기 24:1의 **דבר ערות**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신명기 24:1에 언급된 **דבר ערות**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 입장은 이를 간통으로 본다. 만약 **דבר ערות**를 간통(adultery)으로 이해한다면,³⁸⁾ 신명기 22장에서 이미 간통을 저지른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신명기 22장의 규정에 따르면, 신명기 24:1에 언급된 이 여인은 이혼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신명기 24:1에 언급된 **דבר ערות**는 간통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³⁹⁾

둘째로, 크리스텐센(D. L. Christensen)은 **דבר ערות**를 ‘벌거벗은 것(naked thing)’으로 번역한다. 그는 여성의 하체가 드러난 것, 즉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דבר ערות**는 성적인 간음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는데, 여인은 그녀의 외음부가 노출된 채 잡혔다. 이는 예레미야애가 1:8과 에스겔 16:37에서 인격화된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의 하체가 드러난 것과 유사하다.⁴⁰⁾ 크리스텐센은 그녀가 간통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성적으로 보기 흉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 크리스텐센의 입장은 그녀의 유별난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셋째로, 가레트(A. J. M. Garrett)는 그녀를 성도착자로 본다. 그녀가 결혼한 후 특별한 성적 각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그녀의 남편은 이를 알게 되었다. 가레트는 **דבר ערות**를 그녀의 언어로 표현된 부정결함(uncleanness of a word)으로 이해한다.⁴¹⁾ 첫 번째 남편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그녀와 이혼하게 된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 여인은 두 번째 남편과 성도착 행

38) 바인펠트는 **דבר ערות**를 3절 이하에 언급되는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 행한 성적 일탈로 여긴다. 이로 인해 첫 번째 남편은 그녀와 재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269-270, n. 4).

39) A. Philips, “Some Aspects of Family Law in Pre-Exilic Israel”, 355.

40) D. L. Christensen, *Deuteronomy 21:10-34:12* (Dallas: Word, 2002), 566-567. 이온에는 **ערות**은 성기의 노출을 암시하며, 여인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이온에, “구약성서의 이혼 이해: 영원한 계약의 파괴?”, 「구약논단」 49 [2013], 210-211.).

41) A. J. M. Garrett, “A New Understanding of the Divorce and Remarriage Legislation in Deuteronomy 24:1-4”, *JBQ* 39 (2011), 248-249.

위를 했기에 그녀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고 본다. 가레트는 첫 번째 남편은 신령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단정한다. 신명기 24:1-4에 언급된 규정은 첫 번째 남편이 자신의 영적 순결과 성적 순결을 지키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크리스텐센과 가레트는 각각 여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녀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약자로 여기지 않는다.

위의 세 입장과는 다르게 귀욤(P. Guillaume)은 여인이 불임의 상태였던 것을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동일하게 자녀를 두지 못했다. 귀욤은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였기에 신명기 24:4는 다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두었다고 본다.⁴²⁾ 하지만 우리는 파라모네의 소유인 어떤 노예 소녀의 결혼 계약서(주전 420년)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혼 계약서에는 남자 혹은 여자 후손이 없다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남편이 후손을 두지 않고 먼저 죽으면 그녀는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의 소유주가 된다. 그녀는 다른 남편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기록하고 있다.⁴³⁾ **דבר ערות**를 아내의 불임으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를 이혼의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⁴⁴⁾

지금까지 소개한 입장들은 여성이 잘못을 행했다는 전제를 가진다. 하지만, 앞에서 동사 **הטמאה**를 호괄 형태(**הטמאה** 후트메아)로 읽는 독법은 남편의 임의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는 상황을 상정한다고 분석했다(2.2). 그러면, 우리는 **דבר ערות**를 남편이 이혼을 위한 구실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말로

42) P. Guillaume, *The Economy of Deuteronomy's Core* (Sheffield: Equinox Publishing Ltd., 2022), 185. 그의 책은 신명기에 소개되는 십일조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에, 신 24:1에 언급된 동사 **הטמאה**의 형태를 분석하지 않는다. 레이니(J. C. Laney)도 이 구절을 신적 결합인 불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J. C. Laney, "Deuteronomy 24:1-4 and the Issue of Divorce", *Bibliotheca Sacra* 149 [1992], 5.).

43)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441; H. L. Ginsberg, "Aramaic Papyri from Elephantine", 84-86.

44) 민법 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30628,19098,20221227\)/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30628,19098,20221227)/제840조))는 불임을 6개 항목의 이혼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개를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중의 행위이고, 간통을 포함하거나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1호부터 4호까지는 한쪽 배우자의 고의 과실의 잘못이 있어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것에 해당하고, 5-6호는 어떤 쪽의 과실이 있든 아니면 없든 이를 묻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민법에는 불임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생겨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이는 남편의 일방적 주장을 표현한 용어이다. **ערוות דבר**는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하기보다는 남자(M1)가 보기에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남자가 ‘반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ערוות דבר**는 그녀를 ‘반대하는 것’(그녀를 향해 ‘의의가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⁵⁾ 신명기 23:14[15]에도 사용된 **ערוות דבר**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결 규정과 연관하여 소개된다.⁴⁶⁾ 정결 규정과 관련해서 신명기 23:14[15]의 **ערוות דבר**는 제의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배설물을 가리킨다.⁴⁷⁾ **ערוות דבר**가 구절에 따라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동일한 어휘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반대하는 것’으로 번역할 때 그 의미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두 용례에 동일한 어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는 장점이 있다.

신명기 24:1의 **ערוות דבר**는 그녀와 이혼하기 위한 근거를 가리킨다.⁴⁸⁾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녀와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신명기 24:1에 언급된 **ערוות דבר**(반대하는 것)은 남편이 어떤 구실이든지 빌미를 삼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혼하려는 상황에서 **ערוות דב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 22:14, 17 참조).⁴⁹⁾ 결혼이 법적인 절차

45) 브라우릭(G. Braulik)은 **ערוות דבר**를 ‘반대하는 것(Anstößige, objectionable)’으로 번역한다(G. Braulik, *Deuteronomium II: 16,18-34,12* [Würzburg: Echter Verlag, 1992], 178.). 이 용어가 간음이나 심각한 범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브라우릭은 이 용어가 성적인 면에서 신체적인 결합도 의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의미로 부적절한 행동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46) 『개역개정』은 ‘불결한 것’, 『표준』, 『새번역』, 『공동』은 ‘더러운 것’으로 정결 규정에 맞게 번역한다. 한편, 『개역한글』은 ‘불합(不合)한 것’으로 번역하여 이를 도덕적 의미로 이해한다.

47) 웨스트부룩은 레 18:6에 언급된 ‘에르바’는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이지만, 신 23:15에 언급된 **ערוות דבר**는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 Westbrook,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398-399.).

48) C. Pressler, *The View of Women Found in the Deuteronomic Family Laws*, 57, n. 44 참조.

이 어구를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삼마이 학파는 간음만이 이혼의 사유가 되었고, 자유적인 힐렐 학파는 사소한 것으로도 아내를 추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힐렐 학파는 **ערוות**를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דבר**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리를 잘못 하는 것도 이혼의 사유라고 말한다. 한편, 랍비 아키바는 아내의 잘못이 없어도 남자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이혼할 수 있는 것도 말한다. 미슈나(Mishnah)에서 이혼에 관한 규정인 기틴(Gittin) 9:10에 ‘수치되는 일’에 대한 전문은 웨그너(J. R. Wegner)의 책과 배정훈의 논문을 참조하라(J. R. Wegner, *Chattel or Pers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Mishnah*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46; 배정훈, “신명기 24장 1-4 절에 관한 주석 -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규정”, 55.). 배정훈은 힐렐 학파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아내가 접시를 깬다 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웨그너는 “그녀가 그의 식사를 태웠다 해도(even if she [merely] burned his dinner)”라고 소개한다. 즉 요리를 잘못하는 아내의 행동이 그 예로 소개된다.

49)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된, 누명을 쓴 여자를 보호하는 법을 다루는 신 22:13-21에서 **ערוות דבר**와

에 따라 진행되었듯이 이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혼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남편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여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해 דבר ערות(반대하는 것)을 언급한다. 결국 신명기 24:1-4에 언급된 여성은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이혼을 당했고, 그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⁵⁰⁾ 이와 같은 대우를 받은 여인을 향해 첫 번째 남편이 재혼하여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여 홀로 된 전처를 다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재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첫 번째 남편에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 여인과의 재혼이 허락된다면, 첫 번째 남편은 두 번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⁵¹⁾ 이는 십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또한 여기게 된다.⁵²⁾ 신명기 24:4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으로 규정한다.⁵³⁾

3. 나오는 말

필자는 본문에서 דבר ערות를 ‘반대하는 것(의의가 있는 것)’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고, 동사 הטמאה를 호팔 형태(הטמאה 후트메아)로 읽을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용어는 복수형 형태인 דבריים עלילת(신 22:14, 17)이다. 『개역개정』은 דבריים עלילת을 ‘비방거리’로 번역한다. BDB, DCH, HALOT에 따르면, דבריים עלילת은 말뿐이면서 근거가 없는 고소를 의미한다(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4], 760; DCH, “עלילה”, 6:425;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2001], 833.)

50) 신 24장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함을 밝히는 장이다. R.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1961), 149. 출 22:21-27[20-26]; 신 23:16 등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51) G. Braulik, *Deuteronomium II: 16,18-34,12*, 177; J. G. McConville, *Deuteronomy*, 359-360; R. Westbrook,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403-404.

52) 카우프만은 신 24:8-25:5는 8계명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S. A. Kaufma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139-140.). J. C. Laney, “Deuteronomy 24:1-4 and the Issue of Divorce”, 4 참조.

53) 신명기 안에서 ‘가증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킨다. 또한 제의적인 사건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레 18, 20장과는 달리 신명기 안에서는 ‘가증한 것’이 성적인 것과 연관하여 소개되지 않는다. 신명기에서 가증한 것은 첫째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신 7:25, 26; 12:31; 13:14; 17:4; 20:18; 32:16)과 연관되고, 이와 연관하여 자녀들을 불살라(불 가운데 지나게 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것(신 12:31; 18:12)에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신명기 안에서 다양한 경우들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 그 예로 부정한 음식(신 14:3), 흙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신 17:1), 남녀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신 22:4), 창기나 남창(개로 소개된다)이 번 돈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는 것(신 23:18[19]), 부당한 저울을 사용하는 자(신 2:16), 장색이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신 27:15) 등이 언급된다.

주장하였다. 신명기 24:1-4는 여자(W)가 자기 결정권을 분명히 발휘하였고, 약자인 여자의 의견이 존중되어 이혼하였는데, 상황이 바뀌어 다시 두 사람(M1과 W)이 나름 동등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기에, 다시 결합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도리어 남자의 편익에 의해 여자가 일방적으로 취급되었음을 소개한다. 남자의 이익을 위해 강한 자인 남자가 다시 약자인 여자를 이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것이기에 신명기 24:4b에 “가증한 것”으로 규정한다.

신명기 24:1-4는 창세기 2:24에 소개된 처음 결혼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신명기 24:1-4는 또한 이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있을 법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결혼한 여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하게 되었고, 그녀가 재혼한 후 이혼했거나 사별하여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시 재혼(*palingamy*)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신명기 24:1-4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매우 강하게 피력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온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의지하기보다는 법적인 규정으로 명문화할 때 그 사회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은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 신명기 24:1-4는 가부장적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제어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이고 제도적 개선이 더욱 필요함을 또한 일깨워 준다.

<주제어>(Keywords)

이혼, *דבר*, *ערוֹת*, 가족법, 신명기법, 가증한 것.

divorce, *דבר*, *ערוֹת*, family law, Deuteronomic law, abomination.

<참고문헌>(References)

- 배정훈, “신명기 24장 1-4절에 관한 주석-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규정”, 『장신논단』 45 (2013), 41-65.
- 왕대일, 『왕대일 교수의 신명기 강의: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1.
- 이은애, “구약성서의 이혼 이해: 영원한 계약의 파괴?”, 『구약논단』 49 (2013), 206-233.
-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성경원문연구』 38 (2016), 97-118.
- 주용, 폴-무라오까, T.,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프리처드, 제임스 B.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주원준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Andersen, F. I. and Freedman, D. N., *Amos*, New York: Doubleday, 1989.
- Berlin, A. and Brettler, M. Z., eds., *The Jewish Study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Botta, A. F., *The Aramaic and Egyptian Legal Traditions at Elephantine: An Egyptological Approach*, London: T&T Clark, 2009.
- Braulik, G., *Deuteronomium II: 16,18-34,12*, Würzburg: Echter Verlag, 1992.
-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4.
- Carmichael, C. M., *The Laws of Deuteronomy*,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 Christensen, D. L., *Deuteronomy 21:10–34:12*, Dallas: Word, 2002.
- Clines, D. J. A., ed., “עֵרְוָה”,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6,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7, 425.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de Vaux, R.,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1961.
- Finley, T. J., *Joel, Amos, Obadiah*, Chicago: Moody, 1990.
- Garrett, A. J. M., “A New Understanding of the Divorce and Remarriage Legislation in Deuteronomy 24:1-4”, *JBQ* 39 (2011), 245-250.
- Gesenius, W., *Gesenius' Hebrew Grammar*, E. Kautzsch, ed. and A. E. Cowley, trans.,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2006.
- Ginsberg, H. L., “Aramaic Papyri from Elephantine”, J. B. Pritchard, ed., *The Ancient Near East: A New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vol. II,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83-86.
- Guillaume, P., *The Economy of Deuteronomy's Core*, Sheffield: Equinox Publishing Ltd., 2022.
- Hur, S. W., "The Rhetoric of the Deuteronomistic Code: Its Structures and Devices", Ph.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2013.
- Kaufman, S. A.,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Law", *Maarav* 1:2 (1978-79), 105-158.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2001.
- Laney, J. C., "Deuteronomy 24:1-4 and the Issue of Divorce", *Bibliotheca Sacra* 149 (1992), 3-15.
- McConville, J. G.,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 Merrill, E. H., *Deuteronomy*,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1994.
- Miller, P. D., *Deuteronomy*,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Muraoka, T., "Notes on the Syntax of Biblical Aramaic", *Journal of Semitic Studies* 11 (1966), 151-167.
- Patton, M. H., "Working with Biblical Hebrew Prose", M. V. Van Pelt, ed., *Basic of Hebrew Discourse: A Guide to Working with Biblical Hebrew Prose and Poet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Academic, 2019, 23-144.
- Philips, A., "Some Aspects of Family Law in Pre-Exilic Israel", *VT* 23 (1973), 349-361.
- Philo of Alexandria, *Philo, with an English Translation*, F. H. Colson and G. H. Whitaker, trans., London: Heinemann, 1926-1944.
- Pressler, C., *The View of Women Found in the Deuteronomistic Family Law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 Smith, B. K. and Page, F. S., *Amos, Obadiah, Jonah*,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1995.
- Stuart, D., *Hosea-Jonah*, Waco, Texas: Word, 1987.
- Thompson, J. A., *Deuteronomy*, London: IVP, 1974.
- Tigay, J. H., *Deuteronom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von Rad, G., *Deuteronom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 Walton, J. H., "The Place of the Hutqattel within the D-Stem Group and its Implications in Deuteronomy 24:4", *Hebrew Studies* 32 (1991), 7-17.
- Warren, A., "Did Moses Permit Divorce? Modal weqatal as Key to New Testament

Readings of Deuteronomy 24:1-4”, *Tyndale Bulletin* 49 (1998), 39-56.

Wegner, J. R., *Chattel or Pers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Mishnah*,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Wenham, G. J., “The Restoration of Marriage Reconsidered”, *JJS* 30 (1979), 36-40.

Westbrook, R.,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B. Wells and R. Magdalene, eds., *Law from the Tigris to the Tiber: The Writings of Raymond Westbrook. Volume 2: Cuneiform and Biblical Source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9, 387-404.

Yaron, R., “The Restoration of Marriage”, *JJS* 17 (1966), 1-11.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דְּבַר עֲרוֹת and הַטְּמֵאָה
in Deuteronomy 24:1-4**

Changyop Lee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palingamy of a man who tries to remarry his former wife after the end of her second marriage or the bereavement of her second husb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ntire statement of Deuteronomy 24:1-4 with a new perspective, a syntactic analysis of Deuteronomy 24:1-4 is attempted. Key words such as the verb הַטְּמֵאָה and דְּבַר עֲרוֹת ar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observe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statement “after she has been defiled” and the words דְּבַר עֲרוֹת.

Unlike the traditional position of understanding Deuteronomy 24:1-4 as a conditional protasis (vv. 1-3) and apodosis (v. 4), the sentences in verses 1-4 are composed of declarative sentences (D) that describe successive events. וְהָיָה אִם used in Deuteronomy 24:1a should not be viewed as a marker for a conditional clause, but rather functions to inform that new events are continuing following the first event mentioned in Deuteronomy 24:1a.

The man (M1) uses דְּבַר עֲרוֹת as technical term (the ‘objectionable’) to lay the grounds for his divorcing his wife. Rather than being a term that refers to a specific situation, דְּבַר עֲרוֹת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man (M1)’s ‘opposition’ to show that he cannot maintain his marriage. The term denotes unseemly behavior in general. There are three possible readings of the verb הַטְּמֵאָה without transforming or repositioning consonants. Reading the verb הַטְּמֵאָה as the passive form of the reflexive expresses the fact that the woman is passively defiled. But because her situation does not fit with the reflexive usage which connotes benefiting, I suggest that reading the verb הַטְּמֵאָה as the hophal form (הַטְּמֵאָה) is a more suitable reading for its contexts than the reflexive form. It fits well with the situations completely governed by the arbitrariness of the man (M1). Therefore, Deuteronomy 24:4 forbids him (M1) from taking her as his wife again by the unilateral expediency of her husband for his own benefit.

Deuteronomy 24:1-4 does not deny the meaning of the marriage introduced in

Genesis 2:24. Deuteronomy 24:1-4 also does not aim to introduce general rules regarding divorce. It presents specific, likely examples. Deuteronomy 24:1-4 can be seen as expressing very strong intention to protect women,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Deuteronomy 24:1-4 clearly shows that the goal is not to fundamentally change the patriarchal society, but to control the hearts of those who want to abuse his power for his own good.